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사용함.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를 근거로 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6억 6천7백만원) 사용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¹⁾에서 시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결과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것임.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시설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스포츠 문화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기간(’12.5.30.~’15.1.31) 32개월동안 총 사업비 326억원(시설비 2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인 (주)성지건설, 흥용종합건설(주)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2015 가합578642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소송금액은 5억 5천8백만원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연장 사유>

계약일자	준공기한	변경사유
12.05.30.	13.02.28	당초 계약
13.02.20.	13.08.15.	공사민원 및 지하철 인접 굴착승인 협의기간 반영
13.08.14.	13.09.13.	동대입구역 5번 출입구 철거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3.09.13.	14.01.30.	시설안전강화 및 미관개선,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공연인프라 확보, 지붕재 개선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4.01.02.	14.05.31.	설계기간 추가 소요
14.07.23.	14.08.3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조변경의 설계진행과 철골 공사기간 및 설계도서 등 시공상세도면 작성 등으로 인한 연장
14.12.30.	15.01.31.	원활한 운전을 위한 2차계약 연장

그간 소장이 접수(’15.12.29.) 되어 변론이 진행되었고 (’16.4.15.~’18.08.17) 우리시의 일부 패소로 판결선고

1) 예산배정: 체육정책과/ 사업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18.9.21)가 나자 서울시는 항소포기방침을 수립(’18.10.16)하여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18.10.19)함.

판결내용은 피고(서울시)는 원고 (주)성지건설과 흥용종합건설(주)에게 각각 279,622,069원, 278,505,813원(합계 558,127,882원)과 2015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결정금액〉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2018. 9. 21.	558,127,882	
이 자	2015. 8. 27. ~ 2018. 9. 21.	102,848,442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2018. 9. 22. ~ 2018.10.15.	5,963,559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3	

- 동 사안에 대해 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추가적인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필요한 절차(감리검토보고서 제출 등)를 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원은 기간연장 당시 합의각서 내용만으로는 시공사가 간접공사비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각서 작성 당시는 간접공사비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간접공사비 청구 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 외에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쟁점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에 대하여 번복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금액이나 추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포기 방침을 수립함('18.10.16)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배상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사례로 판단됨.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15.12)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사용 전 이용·전용 등 재원충당('18회계연도 집행잔액 88억 8천9백만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예산배정은 체육정책과이나 사업 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인 바,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소송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붙임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붙임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399 m^2
리모델링 8,384 m^2 , 증축 3,015 m^2 , 좌석수 4,507석, 전광판 2대
- 공사기간 : 2012. 5. 30. ~ 2015. 1. 31.(32개월)
- 사업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사업비 : 326억원)
- 시 공 사 : (주)성지건설, 흥용종합건설(주) (도급금액 : 147억원)

□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개요

- 사 건 : 2015가합578642 공사대금
- 원고/피고 : (주)성지건설, 흥용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 소송수행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보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청구금액 : 837,180,000원
- 사건개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 제기
- 그간 진행사항
 - '15.12.29. : 서울시 소장 접수
 - '16.04.15.~2018.08.17. : 변론진행
 - '18.09.21. : 판결선고 (우리시 일부 패소)
 - '18.10.16. : 항소포기방침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18.10.19. : 판결금 및 이자 지급
- 1심 판결결과 : 우리시 패소, 판결금 및 이자 총 666,939,880원 지급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18.9.21.	558,127,880	
이 자	15.8.27. ~ 18.9.21.	102,848,440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18.9.22. ~ 18.10.15.	5,963,550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0	원 단위 절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I·SEOUL·U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관리번호 2015-0262, 공사대금)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민사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1)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642 공사대금
- 2) 당사자 : 원고 성지건설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서울특별시
- 3) 소송물 가액 : 837,180,000원
- 4) 판결문 송달일 : 2018. 10. 4.
- 5) 항소기한 : 2018. 10. 18.
- 6) 소송지원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건축총괄과

2. 판결주문

- 1) 피고는 원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에 279,622,069원, 원고 흥용종합건설 주식회사에 278,505,8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9.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판결이유

- 1) 1차수 공사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549일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한 2014. 9. 12. 전인 2014. 8. 27. 피고에게 1차수 공사의 연장기간 549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수 공사의 연장기간 549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금액에 반영된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까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음.

3) 간접공사비 산정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추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빙자료가 없는 3개월분의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함.

4) 1차수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현장유지·관리만을 위한 인원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 진행 당시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감정인이 인정한 간접노무 인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5) ① 당사자 간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연장된 1차수 공사기간 중 일부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1차수 계약의 공사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간접공사비를 80%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4. 항소포기이유

1) 간접노무인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2018. 6. 4.자 사실조회회신은 적절한 간접노무인원이 7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명시되지 않아서 항소심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증액에 따라 간접비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서 항소심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1심 법원에서는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간접비를 20% 감액하였는 바, 우리시가 항소하여 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고 간접비 감액비율이 축소되는 경우 1심 결과와 판결금 액수는 유사할 것으로 사료됨.